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660

발의연월일: 2021. 12. 1.

발 의 자: 백종헌・유경준・최춘식

강기윤 • 구자근 • 장제원

정운천 · 서정숙 · 조경태

지성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의료급여기관에 비급여항목 비용을 지불한 자는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, 확인 결과 해당 비용이 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,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,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.

이에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3제5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 정법률안」(의안번호 1366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, 방법, 절차,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3(급여 대상 여부의 확	제11조의3(급여 대상 여부의 확
인 등) ① ~ ④ (생 략)	인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
	른 확인 요청의 범위, 방법, 절
	차,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
	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